

형식설계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Durations) 30일
신청인 (Applicant)	성명 또는 명칭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주소 Address	
[] 항공기	종류	
	형식	형식증명번호
[] 발동기	설계자 성명 또는 명칭	제작일련번호
	제작자 성명 또는 명칭	
[] 프로펠러	제작자주소	
	감항증명번호 (항공기만 해당한다)	감항증명 유효기간 (항공기만 해당한다)
변경사유		
비고		

「항공안전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형식설계를 변경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Documents)	1. 형식증명서(copy of Type Certificate) 또는 제한형식증명서(copy of Restricted Type Certificate) 사본 2. 인증계획서(Certification Plan) 3. 항공기 3면도(The three view drawing of that aircraft) 4. 발동기의 설계·운용 특성 및 운용한계에 관한 자료(The description of the engine design features, operating characteristics, and operating limitations)(발동기의 경우에만 해당)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Documents in specified Korean Airworthiness Standards	수수료(Fee)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에서 정한 수수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